2023년 스타트업 판로지원 패키지-해외 판로개척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창업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국내·외 시장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운영하는 「2023년 스타트업 판로지원 패키지-해외 판로개척지원」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17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Ⅰ 모집개요

□ 사업목적

아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국내・외 시장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판로개척지원

□ 운영내용

ㅇ 행 사 명 : 2023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ㅇ 행사일시 : 2023. 7. 13.(목) 10:00 ~ 16:00

ㅇ 행사장소 :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ㅇ 운영방식 : 해외 파트너(바이어, 글로벌유통사) 및 신청기업 간 1:1 상담

- 제품 샘플 및 외국어 홍보물 지참(제품 전시예정)

- 해외바이어가 상담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에 한해 매칭 예정

O 바이어 구성 : 해외 바이어 6인, 글로벌 유통사 4인(상세내용 붙임 확인)

ㅇ 지원내용

- 해외 현지 바이어와의 1:1 매칭 상담, 통·번역 서비스, 계약을 위한 컨설팅 등
- 수출상담회 상담일지 작성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논의
- 참여기업 중 계약체결(예정)시 차년도 마케팅 분야 후속 지원 예정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바이어 발굴 | | 공고 및 접수 | |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
| 2023. 3. ~ 4. | → | 2023. 5. 17. ~ 5. 31. | → | 2023. 6. 1. ~ 6. 30. | → | 2023. 7. 13. |
| 저브차ㅈ세디 | | 코트라 온라인 | | 전북창조센터 | | 전북창조센터 |
| 전북창조센터 | | 신청 페이지 | | 유관기관 | | 유관기관 |

* 유관기관 : 전북중기청, 코트라 전북지원단

Ⅱ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ㅇ 창업 7년 이내(2016년 이후) 기업
 - 센터 관리기업* 및 특화분야(농생명·바이오, 금융·빅데이터, 탄소융 복합·소재)기업 및 VC/AC 추천 기업 집중 지원 예정
 - * 센터 관리기업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 구분 | 확인 서류 및 기준 |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
|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의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 신청제외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기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舊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 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Ⅲ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방법

- ㅇ 접수기간 : 2023년 5월 17일(수) ~ 5월 31일(수) 24:00까지
 -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온라인 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불가)
- o 접수방법 : 코트라 사업신청 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www.kotra.or.kr)
- 1. KOTRA 법인 회원 가입(www.kotra.or.kr 회원가입)
 - * 기 법인회원은 가입 불요/개인회원일 경우 법인 회원으로 전환 진행
- 2. buyKorea 상품등록 진행
 - * 첨부 상품등록가이드 참조 등록 진행, 기 등록 기업도 되도록 신규 등록 진행
 - ** 사업신청 시 buyKorea 상품등록 정보를 불러와야 하는 관계로 우선 등록 진행
 - *** buyKorea 승인처리가 사업신청 기간(~5.31일) 이후 승인 될 경우에는, KOTRA 전북지원단 김하영 과장에 문의(Tel. 070-7931-0802)
- 3. **신청서 작성경로** : <u>www.kotra.or.kr</u> → 사업신청 → 사업명 스타트업 검색 → [스타트업 신청용, 일반기업 X] 스타트업/수출유망기업 상담회 클릭 → 사업 신청
- ㅇ 신청문의 : 성장육성팀, 063-220-8905 / aj8052@ccei.kr

□ 유의사항

o 서류접수 시 접수처와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

□ 제출서류

| 구분 |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
|----|-------------|-------------------------|------|---------------------------------|--|
| 1 | ■ 수출성 | 상담회 참여신청서 | 필수 | - | |
| 2 | ■개인정 | 성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2T | - | |
| 구분 | | 증빙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
| 1 | ■대표제 | · 신분증 | | - | |
| 2 | ■창업기 | 기업 확인서 | | -신청 후 10일정도 소요 -신청화면 캡처본도 인정 | |
| | ■ 개인 사업자등록증 | | A | | |
| 3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필수 | - | |
| 4 |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
| 5 | ■자사제 | ll품 외국어홍보자료(리플릿, 동영상 등) | | | |

^{*}홍보자료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이메일 발송요망(finplh@kotra.or.kr)

Ⅵ 문의 및 연락처

| 참여기관 | 문의사항 | 연락처 |
|-------------|---------------------|---------------|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 모집 수출상담회 개최 | 063-210-6482 |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업기업 모집 수출상담회 개최 | 063-220-8905 |
| 코트라 전북지원단 | 해외바이어 발굴 · 매칭 | 070-7931-0802 |

붙임1 2023년 해외 바이어 현황

| 연번 | 기업명 | 국가 | 제품군 | 비고 |
|----|----------------------|---------------------------|---------------------------------------|--------|
| 1 | 희창물산 | 미국, 캐나다, 호주, 아시아, 중동 등 | 식품(가공품, 냉동식품) | 글로벌유통사 |
| 2 | 울타리USA | 미국 | 식품(전통식품, 지역특산품,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 | 글로벌유통사 |
| 3 | 꽃마USA | 미국, 베트남 | 식품/리빙용품 | 글로벌유통사 |
| 4 | 한인홍 | 홍콩 | 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음료 등) | 글로벌유통사 |
| 5 | SK.FOODS 1975 | 태국, 베트남, 바레인 | 농산물/가공식품 | 해외바이어 |
| 6 | 제시카마켓 | 호주 | 식품(가공품, 냉동식품) | 해외바이어 |
| 7 | ID-LOUVRE Co.,Ltd | 일본 | 식품(전북 수산절임, 생선반건조, 건강차)/ 유기농화장품 | 해외바이어 |
| 8 | Spencer & Douglas | 영국 | 식품(FMCG) / 헬스케어 / 핀테크 | 해외바이어 |
| 9 | (코트라 발굴) | 동남아시아, 일본 | (바이어 수요반영) | 해외바이어 |
| 10 | (코트라 발굴) | 동남아시아, 일본 | (바이어 수요반영) | 해외바이어 |

※바이어 2인은 코트라 전북지원단에서 추가 발굴 예정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 창업여부 기준

| 창업이력 |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 상세 구분 | | | | 창업여부 | | |
|---------------|-------------------|--------------|-------------|------------------------|-------------|------|----|--|
| 사소/즈어 | 게이 / HI이 | 기존의 개인사업자 유지 | 동종유지 | | | 불인정 | | |
| 상속/증여 개인 / 법인 | | 또는 폐업 여부 무관 | 이종창업 | | | 창 | 업 | |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 불인정 | |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 업 | |
| | 개인기업 | | 도조차어 | 폐업 3년 초과 | | 창 | 업 | |
| | 개인기합 | | 동종창업 | 부도/파산 2년 초과 | | 창 | 업 | |
|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 | | 창 | 업 | | |
| | |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 | | 창 | 업 | | |
| | 법인기업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 업 | |
| -1010174 | | | 동종창업 | 동일인인 경우 | | 불인 | 인정 | |
| 창업이력 있음 | | | | 동일인이 아닌 경우 | | 창 | 업 | |
| <i>7</i>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법인전환 |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 | 창 | 업 | |
| | | | 이종창업 | | | 창 | 업 | |
| | | | 동종창업 | 동일인인 경우 | 폐업 3년 초과 | 창 | 업 | |
| | | | | | 부도/파산 2년 초과 | 창 | 업 | |
| | | | 동일 | | 인이 아닌 경우 | 창 | 업 | |
|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 자회사 해당 | | | 불인 | 인정 | |
| | | 기는 답한사답사 표시 |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 | | 창 | 업 | |
| | |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 | | | 창 | 업 | |

- 1.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 2.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 3.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 가. 법안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 4.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 5. "자회사" 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 6. 중소기업 폐업이후 3년 이후의 동종 업종 개시는 창업 인정(부도·파산 2년)
- 7.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참고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
| 1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 2 | 부동산업 | L68 |
| 3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